

# 2023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

## 「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」 시행계획(2차) 공고

2023년도 「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6월 26일  
기술보증기금 이사장

### 1 사업 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-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
- 민간 기술거래기관\*의 기술거래시장 참여 및 기술거래 활성화 촉진

\*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기술이전법'이라 한다)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, 대학, 테크노파크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

#### □ 지원내용 및 공고일정

- 기술이전 완료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

| 공고 구분  | 접수기간  | 선정 및 통보(예정)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1차(종료) | 2~5월  | 6월          |
| 2차     | 6~8월  | 9월          |
| 3차     | 9~11월 | 12월         |

\* 신청현황 및 예산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지원규모 등 변동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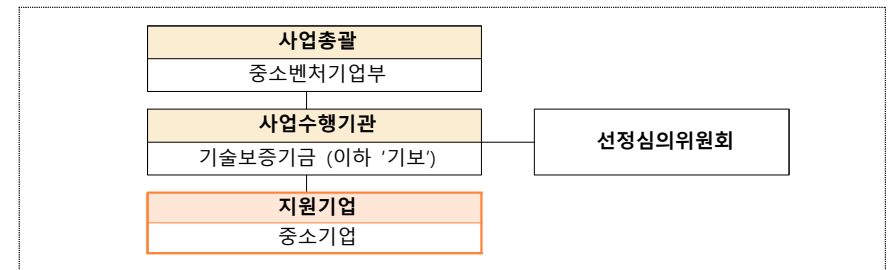
#### □ 지원규모 및 예산

- (지원규모) 연간 60건 내외
- (지원예산) 150백만원 내외  
\* 지원내용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# 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- 법(법령) :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및 동법 시행령
- 요령(고시) : 중소기업 기술거래·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
- 관리지침 :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

#### □ 추진체계



- 사업총괄 :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(중소벤처기업부)
- 사업수행기관 : 사업 운영, 지원기업 선정·평가\*, 과제관리 및 비용 집행, 사업성과 관리 등 (기술보증기금)

\* 선정심의위원회 :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

#### □ 지원방식 및 한도

- (지원방식) 기술 유형에 따라 신탁기술\*과 일반기술\*\*로 구분하여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

\* (신탁기술) 「기술이전법」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'기술신탁관리기관'에 위탁된 기술

\*\* (일반기술) 「기술이전법」제2조제5호의 '공공기술' 등 신탁기술 이외의 기술

- (지원한도)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계약 건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

\*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(부가세 등)은 지원기업이 부담

## 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

### □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

- (지원대상)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신청일 현재 납부한 중소기업(기술거래 유형별 차등 지원)

- (계약 체결일) 2022. 12. 1. ~ 2023. 11. 30.

- (신탁기술) 「기술이전법」상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과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기업(위탁자)\*

\* 기술신탁관리기관과의 기술신탁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신탁한 권리자

- (일반기술) 민간 기술거래기관\*의 중개활동을 통해 거래한 공공기술\*\* 등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과 중개수수료 납부를 완료한 기업

\* 기술이전법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,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

\*\* 기술이전법 제2조제5호의 공공기술을 의미

- (지원내용)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방식에 따라 기 납부한 중개수수료 일부(혹은 전부)를 중소기업에게 지급

| 구분    | 신탁기술 중개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납부 기관 | 「기술이전법」상 기술신탁관리기관 (기술보증기금)        | 「기술이전법」상 민간 기술거래기관 (기술보증기금, 공공기관 등 제외) |
| 지원 범위 | 위탁자(양도인)가 납부한 중개수수료(면세) 전액 또는 일부* | 매수자가 납부한 중개수수료 (부가세 제외) 전액 또는 일부*      |

\* (지원한도) 건당 최대 중개수수료 10백만원 이내

\*\* 중개수수료, 중개활동 노력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선정심의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

### □ 신청 자격

- 신청일 현재 사업시행연도 직전 1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연도 이내\*\*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 정산 또는 납부를 완료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\*\*

\* (기술이전 계약 체결일 및 실질행된 중개수수료 납부/정산일) '22.12.1. ~ '23.11.30.

\*\* 유의사항 : 기술보유자인 중소기업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3항 단서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

### □ 제외 대상

- 신청기업 또는 평가대상 기술이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선정 후 비용 지급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

- ① 휴·폐업 중인 기업
- ②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③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 '참여제한' 중인 경우

| 구 분   | 확인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참여 제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s.go.kr) → 과제참여·관리 → 제재정보조회 등</li> <li>○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ch.go.kr) → 과제신청 → 과제신청안내 → STEP1/ 사전준비사항 → 참여제한 확인</li> </ul> |

- ④ 평가대상 기술의 권리에 대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| 평가대상 기술 제외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되거나 출원 중에 있는 기술 (단, 기술보유자 동의하에 전용실시권이 이전된 건은 신청 가능)</li> <li>- 질권,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기술</li> <li>-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기술</li> <li>- 고소·고발, 소송, 심판, 강제집행, 조정, 중재 등 사법 또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</li> <li>- 권리자가 다수인 기술(단, 공동권리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아 신청 가능)</li> </ul> |

- ⑤ 제출서류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
- ⑥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- 평가대상 기술 또는 일반기술 매수자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(법상 창업 여부와 무관)

####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

-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
- 1. 일반유흥주점업, 2. 무도유흥주점업, 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
- 4.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기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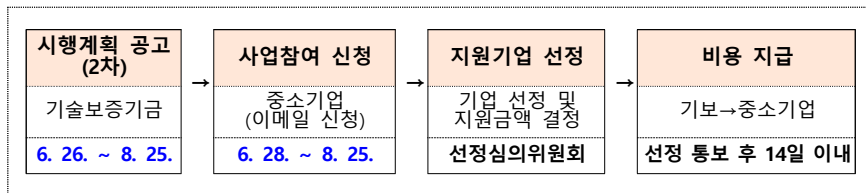
- 매수희망자가 사업화 주체(기업)가 아닌 일반 개인(자연인)인 경우 또는 신청기업과 관계기업\*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

#### \* 관계기업

- ①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
- ②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관계기업
- ③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의 집단에 소속하는 기업 (개인기업 포함)

### 3 지원절차 및 내용

#### □ 지원절차



\* 상기 일정 등은 기보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# □ 기술 유형별 중개수수료 지원내용

- (지원범위) 본 사업기간\* 내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서 상, 실집행된 기술료\*\*에 따라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금액 이내

\* 사업시행연도 직전 1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연도 이내('22.12.1.~'23.11.30.)

\*\* (기술료) 정액기술료 또는 착수기본료/선급기술료에 한하며, 매출실적 등에 따른 경상기술료 제외

- (지원한도)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중 최대 1천만원 이내

\*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중 1천만원 초과분 또는 해당 중개수수료율이 지원요율 한도 초과 시 그 차액은 신청기업이 자체 부담

\*\* 선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 보전(페이백) 형식으로 지원

#### 가 신탁기술

- 양도인(위탁자)이 정산을 완료한 중개수수료(면세) 전액 또는 일부

\* 중개수수료 최대 1천만원 이내

#### 나 일반기술

- 일반기술의 기술공급자(양도인)가 중개기관에 부담한 중개수수료율과 동일한 중개수수료율을 한도로 매수자(중소기업)가 정산/납부한 중개수수료(부가가치세 제외) 전액 또는 일부

\* 중개수수료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차등지원

\*\* 기술공급자 납부요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요율 차등결정(최저 2% - 최고 10%)

#### <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지원요율표 (예시) >

| 기술공급자(양도인) 납부요율 | 중소기업(매수자) 지원요율 한도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-               | 최저한도 2% 적용        |
| (예시) 8%         | (예시) 8% 이내        |
| (예시) 10% 초과     | 최고한도 10% 적용       |

\* 중소기업 지원요율 한도(최저 2% ~ 최고 10%) 초과분은 신청기업 자체 부담  
(단, 기술공급자 납부요율이 없는 경우, 최저한도 2%를 적용)

## 4 선정 및 통보

### □ 서류접수 및 요건검토

- (요건검토) 지원대상, 신청자격, 제외대상 여부 등 기본요건 사전 검토 및 기술이전계약서,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 등 제출서류 확인

※ (유의사항) ① 제출서류가 모두 유효한 경우 '선정심의위원회' 대상으로 추천  
 ② 제출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자동 탈락되며, 제출서류 중 "개인(기업)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<별첨1>"(원본)는 반드시 기보로 우편제출해야 함  
 ③ 신청기업이 미비된 서류(②번 서류에 한함)를 보완제출하였더라도 신청 마감일 경과 후 5일(영업일 기준) 이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

### □ 선정심의위원회 개최

- (평가방법) 기보 내·외부 전문가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건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신청기술 유형별 심의 진행
- (신탁기술)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의 적정성\* 등 검토 및 중개수수료 지원요율 결정
- \*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의 일반사항, 중개활동 노력도 및 추진결과 등 제출서류 적정성 확인
- (일반기술) 신청기업의 ①기술도입역량, ②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의 충실성 등 서면평가 및 중개수수료 지원요율(6p) 결정
- \*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(평점순), '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의 충실성' 항목이 선정심의 기준에 따라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탈락될 수 있음

① 기술도입역량  
 특허권 보유, 기술개발 전담조직, 벤처/이노비즈 기업 해당여부, 국가 R&D 수행경험 등 신청기업(매수자)의 기술도입역량을 평가

②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의 충실성  
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의 일반사항, 진성기술 수요발굴 수준, 중개활동 노력도 및 추진결과 등 평가

- (선정통보) 선정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결과 통보

## 5 신청 기간 및 방법

### □ 공고 및 접수 기간

- (공고기간) '23. 6. 26. (월) ~ '23. 8. 25. (금) (61일간)
- (접수기간) '23. 6. 28. (수) ~ '23. 8. 25. (목) (59일간)

### □ 신청 및 접수 방법

#### 【사업 신청방법】

- 이메일 신청 후 개인(기업)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<별첨1> 원본 등기우편으로 추가 제출

- (이메일 신청) 신청접수 마감일 제출분까지 유효
- 제출서류 연번 별로, 스캔 파일(PDF) 각각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
- \* 파일명을 ① 신청 기본서류\_신청기업명, ② 신청자격 증빙서류\_신청기업명, ③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\_신청기업명 순으로 첨부
- (등기우편 제출) 제출서류 중 "개인(기업)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<별첨1>"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추가 제출 (신탁/일반기술 공통)
- 위 <별첨1> 서류에 한하여, 신청접수 마감일 경과후 5일(영업일 기준, 금번 회차는 '23. 09. 01.(금)) 이내 우편 접수분까지 유효
- 이메일/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서류가 모두 유효한 경우 '선정심의 대상 기업'으로 인정
- 신청기업은 각 연번별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본건 선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

| 구 분  |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이메일  | transfer@kibo.or.k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[메일제목] 혁신중개서비스 활용촉진사업 신청서_신청기업명                     |
| 등기우편 | (우편번호 48400)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8층<br>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전략팀 |

□ 제출서류

가 선택기술

| 연번 | 서식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▶ 신청 기본서류<br>(신청기업은 기술선택관리기관, 공동권리자의 협조를 받아 준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신청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(1) 「혁신중개서비스 활용촉진사업」 참여 신청서(붙임1)<br>- 서식 작성 후 직인 부분에 신청기업(법인/개인) 인감도장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(2) 개인(기업)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<별첨1><br>- 신청기업의 개인(기업)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이메일 및 등기우편(원본)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(3) 협약서(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)<별첨2><br>- 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에 대한 협약서 필수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공동권리자(해당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(4) 협약서(공동권리자용)<별첨3><br>- 기술의 권리가 다수인 경우 협약서(공동권리자용)<별첨3> 및 공동권리자의 개인(기업)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<별첨1> 필수 제출(원본 등기우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기술선택관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(5) 기술선택관리기관 사업참여동의서<별첨4><br>- 본건 사업참여에 대한 동의서(해당기관이 직접 작성)<br>* 해당기관이 사업수행기관(기보 기술거래보호부)에 직접 제출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(6)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 및 추진 결과<별첨6><br>- 기술선택관리기관이 직접 작성<br>* 해당기관이 사업수행기관(기보 기술거래보호부)에 직접 제출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▶ 신청자격 증빙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(1) 사업자등록증명 및 중소기업 확인서<br>-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처: 홈택스 ( 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www.hometax.go.kr</a> ) /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처: 중소벤처24 ( <a href="http://www.smes.go.kr">www.smes.go.kr</a> )<br>- 공고일(23. 6. 26.) 이후 발급분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(2)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<br>- 발급처: 국세-홈택스 ( 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www.hometax.go.kr</a> ) / 지방세-정부24 ( <a href="http://www.gov.kr">www.gov.kr</a> )<br>- 개인기업은 대표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<br>-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(완납)에 한함 |
| 3  | (3) 이전대상기술의 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 등) 등록원부 또는 출원사실증명원<br>- 발급처: 특허로 ( <a href="http://www.patent.go.kr">www.patent.go.kr</a> ) 외<br>- 공고일(23. 6. 26.) 이후 발급분(연차료 납부 및 권리관계 등 사전확인)<br>- 출원 중인 기술은 출원사실증명원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▶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- “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(11p)” 에 명시된 서류를 구비,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나 일반기술

| 연번 | 서식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▶ 신청 기본서류<br>(신청기업은 민간 기술거래기관, 공동권리자의 협조를 받아 준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신청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(1) 「혁신중개서비스 활용촉진사업」 참여 신청서(붙임1)<br>- 서식 작성 후 직인 부분에 신청기업(법인/개인) 인감도장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(2) 개인(기업)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<별첨1><br>- 신청기업의 개인(기업)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이메일 및 등기우편(원본)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(3) 협약서(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)<별첨2><br>- 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에 대한 협약서 필수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공동권리자(해당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(4) 협약서(공동권리자용)<별첨3><br>- 기술의 권리가 다수인 경우 협약서(공동권리자용)<별첨3> 및 공동권리자의 개인(기업)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<별첨1> 필수 제출(원본 등기우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민간기술거래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(5) 기술이전 중개활동 결과보고서(민간거래기관용)<별첨5><br>- 민간기술거래기관이 직접 작성<br>* 해당기관이 사업수행기관(기보 기술거래보호부)에 직접 제출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(6)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 및 추진 결과<별첨6><br>-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직접 작성<br>* 해당기관이 사업수행기관(기보 기술거래보호부)에 직접 제출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(7) 개인(기업)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<별첨1><br>-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개인(기업)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▶ 신청자격 증빙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(1) 사업자등록증명 및 중소기업 확인서<br>-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처: 홈택스 ( 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www.hometax.go.kr</a> ) /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처: 중소벤처24 ( <a href="http://www.smes.go.kr">www.smes.go.kr</a> )<br>- 공고일(23. 6. 26.) 이후 발급분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(2)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<br>- 발급처: 국세-홈택스 ( 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www.hometax.go.kr</a> ) / 지방세-정부24 ( <a href="http://www.gov.kr">www.gov.kr</a> )<br>- 개인기업은 대표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<br>-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(완납)에 한함 |
|    | (3) 이전대상기술의 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 등) 등록원부 또는 출원사실증명원<br>- 발급처: 특허로 ( <a href="http://www.patent.go.kr">www.patent.go.kr</a> ) 외<br>- 공고일(23. 6. 26.) 이후 발급분(연차료 납부 및 권리관계 등 사전확인)<br>- 출원 중인 기술은 출원사실증명원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▶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<br>- “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(11p)” 에 명시된 서류를 구비,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「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」 제출시 유의사항

□ “기술신탁관리기관” 또는 “민간 기술거래기관”과 협의하여 아래 서류 필수 제출

### ① 기술이전계약서 사본

- 양도인(기술공급자), 매수인(중소기업 등), 중개기관(기술거래기관)\*의 서명 및 날인된 계약서(원본대조필 날인)
- \* 중개기관의 서명 및 날인 또는 중개사실에 관한 사항이 '기술이전계약서'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, 기술이전계약서 사본과 함께 중개기관의 기술중개 사실이 확인되는 '특허양도증', '통상실시권 허락서', '전용실시권 허락서' 등 보완제출 가능

### ② 중개수수료 납부 증명서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탁기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양도인(위탁자)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증빙서류*</li> <li>* 정산내역서, 이체확인증, 영수증, 기술신탁 최종계산 승인서 등 정산/납부 내역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반기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양도인(기술공급자)과 매수인(중소기업 등)이 중개기관(민간 기술거래기관)에 지급한 중개수수료 증빙서류*</li> <li>* 협약서, 중개수수료 산정서, 이체확인증, 세금계산서 등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&lt; 기술이전계약서에 중개수수료를 및 금액이 기재된 경우 아래 ①, ② 제출 생략 &gt;</p> <p>① 협약서: 양도인 또는 매수인이 중개기관과의 중개수수료를 등에 대한 별도 협약이 있는 경우 제출</p> <p>② 중개수수료 산정서: 중개수수료를 등에 대한 별도 산정 기준이 있는 경우 제출</p> <p>③ 세금계산서: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 하며, 비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의 직인 날인 필수</p> <p>④ 이체확인증: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, 은행명,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 발급 자료<br/>-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, 제출일 기준 인터넷 이체내역 출력본 등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제출 (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 불가)</p> <p>⑤ 기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필요 시)</p> </div> |

### ③ 기술료 증명서류

- 기술이전계약서 상의 기술료 정산/납부 관련 증빙서류
- \* 정산내역, 이체확인증, 세금계산서, 영수증 등

☞ 중개기관의 정책상 상기 서류를 신청기업에게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, **사업수행기간(기보)에 직접 제출\* 가능 (단, 중개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또는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미비서류 미제출시 심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)**

## 7 유의사항

### 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기업인 중소기업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3항 단서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음
- 동일 기술의 매매 또는 전용실시권 허여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은 본 사업기간\* 내 1회에 한함(사업기간 내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기 지원된 경우 추가지원은 불가)

\* 사업시행연도 직전 1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연도 이내('22.12.1.~'23.11.30.)

- 통상실시권은 본 사업기간 내에 권리자(기술보유자)의 동의를 받아 등록원부에 통상실시권을 신규 등록하거나 통상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원 가능\*

\* 다만, 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이 기 설정되어 있거나 **권리자 동의없이 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**

- 단, 신탁기술에 한하여 동일기술에 대한 복수의 통상실시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원은 1건의 기술이전 계약과 동일한 지원한도(최대 1천만원) 내에서 중복 지원\* 가능

\* 본 사업기간 내에 기술이전계약과 중개수수료 등 비용지급이 완료된 건에 한하며, 중개수수료의 총 합계는 지원한도(1천만원)를 초과할 수 없음

- 직전년도에 동 사업의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은 동일기술의 중개수수료 지원한도(1천만원)는 직전년도에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
- 복수의 기술거래기관이 공동중개한 경우, 중개수수료 지원은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, 동일기술에 대한 공동중개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 한도는 1건의 기술이전 계약과 동일한 지원한도(최대 1천만원) 내에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름

- 최근 1년 이내에 동 사업 신청기술과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타 정부부처, 지자체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사실 또는 신청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  -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,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 -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의 사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한 원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
  -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기보와 사전협의 및 관련내용의 공문을 제출하며, 비용지급 시까지 이전대상 기술의 권리관계\*를 유지해야 함
- \* 이전대상 기술의 등록원부 상 권리의 유효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로 도래하는 경우 등 필요시 연차료를 사전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(신탁기술은 기술신탁관리기관과 별도 협의)
- 사업 진행 상황 안내 등을 위해 신청기업 담당자의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(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) 필히 기재

#### □ 기타 유의사항

-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 또는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- 제출서류의 허위, 위·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「공공재정환수법」, 중소벤처기업부 및 사업수행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선정취소, 제재,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통보 후 기보의 추가요청 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기업의 사정(기업의 확인 지연, 연락 두절 등)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선정취소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지원기업은 향후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자료요청, 이력관리,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- 신청기업은 「중소기업 기술거래·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제21조에 따라 선정심의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(**붙임2**)를 작성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

| 제출서류(첨부서식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붙임1        | 「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」 참여 신청서(중소기업용)  | 공통제출 |
| 별첨1        |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            |      |
| 별첨2        | 확약서(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)         |      |
| 별첨3        | 「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」 참여 확약서(공동관리자용) | 신탁기술 |
| 별첨4        | 기술신탁관리기관 사업참여동의서                  |      |
| 별첨5        | 기술이전 중개활동 결과보고서(민간거래기관용)          | 일반기술 |
| 별첨6        | 기술이전 중개활동 내용 및 추진 결과              | 공통제출 |
| 붙임2        | 이의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
## 9 문의처

□ 사업 문의처 :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전략팀

☎ 051-606-7396 ☎ 051-606-7419

✉ transfer@kibo.or.kr

□ 우편 제출처 : (우편번호 48400)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, 기술보증기금 8층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전략팀

□ 기술이전 절차

| ①-1 방문신청                      | ①-2 인터넷 신청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관할 영업점<br>또는<br>지역별 기술혁신센터 방문 | 스마트 테크브릿지 사이트 접속 | <a href="https://tb.kibo.or.kr">https://tb.kibo.or.kr</a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↓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급기술 탐색          | Tech-Bridge 사이트 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↓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이전신청           | 인터넷 신청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↓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할 기술혁신센터 전산접수   | 사업장 소재 관할 영업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심층상담 진행 (기술혁신센터)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기업고객과 수요기술 심층상담<br>(유선 또는 직접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기술정보 제공 및 매칭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전국 공공연(대학, 연구소 등)<br>보유기술 탐색 및 정보제공                       |
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계약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계약서 작성 및<br>계약체결 컨설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⑤ 수행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IP인수보증 연계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□ 지역별 기술혁신센터

| 구 분        | 전 화           |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| 02-2155-3662  | 서울 서초구 매현로 16, 하이브랜드 리빙관 11층       |
|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| 02-6124-6930  |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, JNK디지털타워 1807호 |
| 인천기술혁신센터   | 032-420-3580  | 인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30, 4층             |
| 경기기술혁신센터   | 031-8006-1570 |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, 세영빌딩 8층       |
| 대전기술혁신센터   | 042-610-2279  |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, 3층                 |
| 부산기술혁신센터   | 051-606-6561  |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, 기술보증기금 별관 2층       |
| 광주기술혁신센터   | 062-570-7350  |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-22, B동 801호   |
| 대구기술혁신센터   | 053-550-1450  | 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, 그랜드M타워 12층         |